

## 부록 1

### 설문지

|    |  |  |
|----|--|--|
| ID |  |  |
|    |  |  |

###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실태 조사

안녕하세요. 서울연구원입니다. 저희 연구원은 서울의 사회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. 이 조사는 '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정책방안'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, 각 동아리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귀하가 답변하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, 통계법 33조(비밀보호)에 의해 보호됩니다. 본 설문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감사합니다.

2016년 8월



※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.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
- 연구책임 : 백선혜 연구위원
- 문의 : 조윤정 연구원 ☎ 02)2149-1138

## A. 동아리 일반현황

A1. 귀하의 동아리가 속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십시오.

- ① 지역기반 동아리      ② 비(非) 지역기반 동아리

| 유형     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-----|--|
| 지역기반 동아리형      | - 회원의 대부분이 동일지역(예: 동일자치구 혹은 동일생활권) 거주하는 경우<br>- 결성계기가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<br>- 지역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<br>- 이외 동아리 활동이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추구하는 경우 등 |
| 비(非) 지역기반 동아리형 | - 회원거주지나 활동에 있어 특별히 지역과 연계된 활동이 없는 경우  |

A2. 귀하는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?

- ① 운영진(현재 또는 이전)      ② 일반회원      ③ 강사      ④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A3. 동아리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?(해당사항에 체크 후, 괄호 안에 구체적 분야를 작성하여 주십시오.)

| 유형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체적 분야 |
|------|--|--------|
| ① 음악 | 음악감상, 노래교실, 악기연주, 국악, 민요, 풍물 등         |        |
| ② 무용 |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리댄스, 방송댄스, 리턴댄스, 브레이크댄스 등 |        |
| ③ 문학 | 글쓰기, 독서, 독서토론, 책임어주기 등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④ 미술 | 서예, 서양화 동양화, 사군자, 스텐실, 만화 등            |        |
| ⑤ 사진 | 사진촬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⑥ 연극 | 연극, 인형극, 뮤지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⑦ 영화 | 영화제작, 영화평론, 영화보기 등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⑧ 공예 | 한지공예, 리본공예, 목공예, 종이접기 등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⑨ 기타 |  |        |

A4. 동아리가 결성된 계기는 무엇입니까?

- ① 기관 프로그램(문화강좌 및 교육) 이수 후(예: 문화교실 수료생)  
 ② 종교기관 내 모임(예: 교회, 성당, 절 등 신도모임)  
 ③ 지역주민들의 모임(예: 지역주민모임, 부녀회 모임 등)  
 ④ 직장 및 학교 내 모임(예: 사내 소모임, 학교 소모임)  
 ⑤ 전문가 모임(예: 예총, 민예총, 학원 등 전문가 모임)  
 ⑥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(예: 온라인 카페 및 SNS활동에서 시작한 모임)  
 ⑦ 기존 동아리에서 독립



B2. 귀하께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(순위별로 하나씩 선택)

|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순위 | 2순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① 회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       |     |     |
| ②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싶어서            |     |     |
| ③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       |     |     |
| ④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      |     |     |
| ⑤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   |     |     |
| ⑥ 관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  |     |     |
| ⑦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             |     |     |
| ⑧ 봉사활동이나 공동체(지역사회)에 관심이 있어서 |     |     |
| ⑨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
### C. 동아리 온라인 활동 관련

C1.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동아리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.(2번 답변 시 14번으로 이동)

- ① 온라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오프라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

C2. 귀하의 동아리 온라인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혀 그렇지 않다 | 별로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대체로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) 동아리 활동 관련 홍보 및 정보교류수단으로 사용한다.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2)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창구수단으로 사용한다.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3) 친목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한다.    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4) 동아리 활동 자료축적의 공간으로 사용한다.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5)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활동을 돕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
### D. 사회공헌 활동 관련

D1. 귀하의 동아리 활동 중 사회공헌 활동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| 전혀 그렇지 않다 | 별로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대체로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)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행사나 축제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.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2) 발표 및 전시, 교육 등 동아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.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3)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.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
D2. 귀하의 동아리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| 전혀 그렇지 않다 | 별로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대체로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)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.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2) 사회공헌 할 수 있는 시간대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맞지 않다.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3)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다.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4)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회원들 간 의견차이가 커서 진행하기 힘들다.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5) 사회공헌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.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
### E. 네트워크(교류) 활동 관련

E1.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| 전혀 그렇지 않다 | 별로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대체로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)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는 우리 동아리를 발전시킬 것이다.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2)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면 좋을 것이다.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3)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.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
E2. 귀하의 동아리가 교류활동을 진행하거나, 진행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혀<br>그렇지<br>않다 | 별로<br>그렇지<br>않다 | 보통이<br>다 | 대체로<br>그렇다 | 매우<br>그렇다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)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.     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2)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만날 시간의 여유가 없다.      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3) 교류 활동에 대한 회원들 간 의견차이가 커서<br>진행하기 힘들다.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4) 교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
#### F. 동아리 활동이 '개인-공동체의식-지역애착도'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

F1.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 개인 삶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혀<br>그렇지<br>않다 | 별로<br>그렇지<br>않다 | 보통이<br>다 | 대체로<br>그렇다 | 매우<br>그렇다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) 동아리 활동은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.  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2) 동아리 활동은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. 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3) 동아리 활동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.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4) 동아리 활동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.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
F2.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혀<br>그렇지<br>않다 | 별로<br>그렇지<br>않다 | 보통이<br>다 | 대체로<br>그렇다 | 매우<br>그렇다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) 동아리 활동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<br>된다.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2) 동아리 활동은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.      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| 3) 동아리 활동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<br>된다. | 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3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|

F3.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혀 그렇지 않다 | 별로 그렇지 않다 | 보통이다 | 대체로 그렇다 | 매우 그렇다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1) 동아리 활동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.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2) 동아리 활동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.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| 3) 동아리 활동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도록 한다. | 1         | 2         | 3    | 4       | 5      |

### G. 동아리 지원 관련

G1. 동아리 지원에서 우선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골라 순위별로 하나씩 표시해주십시오

| 유형  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
|---|-----|-----|-----|
| 1) 연습 및 모임에 필요한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2)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발표장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3) 학습 및 강습 관련 전문가 연결(전문지도자나 상담자)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4) 동아리의 참여가 가능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5) 동아리 홍보의 장 제공(온·오프라인 홍보창구 제공)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6) 동아리 운영 관련 교육 및 상담자 연결(회원관리, 마케팅방법,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) |     |     |     |
| 7) 타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8) 동아리 활동 관련 부수적 장비 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9) 예산(예산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기입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
G2. 서울시 동아리 활성화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.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 수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(주관식)

## H. 인구통계 관련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H1. 성별   | ① 남 ② 여   |
| H2. 연령   | ① 1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  |
| H3. 기혼여부 | ① 예 ② 아니오   |
| H4. 자녀여부 | ① 있음 ② 없음   |
| H5. 학력   | ① 초등학교~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(재학, 중퇴 포함)<br>③ 대학원 졸업(재학 중퇴 포함)  |
| H6. 월소득  | ① 소득 없음 ② 100만 원 미만<br>③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<br>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⑥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<br>⑦ 500만 원 이상  |
| H7. 거주지  |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<br>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<br>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<br>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<br>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<br>인천·경기 그 외 지역 |

-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-

## 부록 2

###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1.5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369호, 2017.1.5., 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기“생활문화단체”란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동아리”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.
3. 그 밖의 용어의 뜻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를 따른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
4.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

5.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)**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문화시설, 동아리,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
  2.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3.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  4. 생활문화단체,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
  5.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③ 개인·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단 설치·운영 등)**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
  2.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
  3.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 4.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
  5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  6.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·홍보·전파
  7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**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
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(예산의 지원)**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회)**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등에 관한 사항
2.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·추진 등에 관한 사항
3.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2조(검사·보고 등)**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6369호, 2017.1.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